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51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 맹성규·강준현·안도걸

복기왕 • 박용갑 • 이학영

김태선 • 이연희 • 신영대

서삼석 • 박균택 • 박희승

민홍철 • 박해철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경력 및 범죄 경력자료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 한 정보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		
	양수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의 조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